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재안이유

-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이
타법(건축법, 산림법, 하천법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중
타법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개정하고자 함.
 -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제6조)
 -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 취소(안제7조)
 - 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 양도의 제한(안제8조)
 - 전염병 질환자, 수수료 납부거부자 등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안제12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파주시관내 감악산 곡릉천, 마장천, 적성 탄광촌, 미타암, 비룡교등 6개소에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중 타법(건축법, 산림법, 하천법)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